

## 성희롱 · 성폭력 예방을 위해서는

성희롱 · 성폭력 문제는 결국 일상과 맞아있는 권력관계와 성차별적 문화의 산물입니다.

그러므로 대학공동체 문화를 보다 평등하게 바꾸어가려는 우리 모두의 노력이 필요합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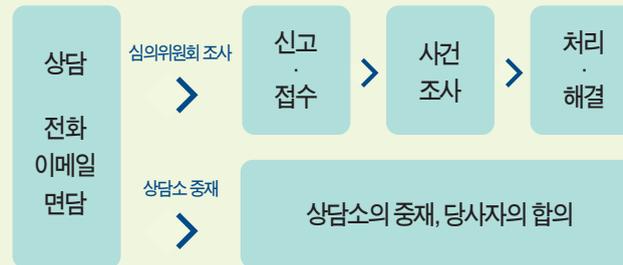
아래와 같은 언어적, 시각적, 신체적 행동은 성희롱이 될 수 있습니다.

- 상대방에게 불쾌감을 주는 음담패설이나 성차별적인 비하의 발언을 반복하는 것
- 타인의 성적인 관계나 성생활에 관하여 소문을 퍼뜨리는 것
- 신체나 외모에 대하여 성적인 비유나 평가를 일삼는 것
- 성적인 대상화를 조장하는 발언을 하는 것
- 타인의 신체 특정 부위를 유심히 쳐다보거나 노골적으로 훑어보는 것
- 자신의 신체 특정 부위를 타인 앞에서 고의적으로 노출하거나 만지는 것
- 업무나 교육과 무관한 외설적인 그림, 낙서, 사진 등을 게시하는 것
- 외설적인 그림, 사진 등을 이메일로 보내 불쾌감을 주는 것
- 학과, 동아리, 수업 관련 회식 자리에서 술을 따르게 하거나 옆에 앉도록 강요하는 것
- 상대방이 원하지 않음에도 전화나 이메일로 괴롭히는 것
- 안마나 애무 등을 요구하거나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신체 접촉을 시도하는 것
- 이익이나 불이익을 조건으로 성적인 만남이나 관계를 요구하는 것

## 상담소 업무

- 성희롱 성폭력 관련 상담 및 사건 지원
- 피해자 보호 및 지원  
가톨릭대학교 성폭력 예방과 처리에 관한 규정에 의거하여 피해자의 심리적, 의료적, 법적 해결을 지원합니다.
- 성희롱 성폭력 예방교육
- 관련 자료발간

## 이용방법



\* 피해자가 사건 신고로 인한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도록 피해자를 지원하며 모든 상담내용은 철저한 비밀보장이 됩니다.

성폭력  
상담소

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역곡 2동 지봉로 43  
가톨릭대학교 성심교정 니콜스관 120호  
홈페이지 : <http://cuksvcc.catholic.ac.kr/>  
e-mail : [cukgcc@catholic.ac.kr](mailto:cukgcc@catholic.ac.kr) (일반문의)  
[counsel@catholic.ac.kr](mailto:counsel@catholic.ac.kr) (이메일상담)  
전화 : 02-2164-4640  
open : 월 ~ 금 9:00 - 17:00

# 성폭력 상담소

<http://cuksvcc.catholic.ac.kr/>

 가톨릭대학교  
성폭력상담소

# 성폭력이란?

“개인의 성적 자율권을 침해하는 신체적, 정신적 폭력으로서, 강제적으로 성적 행위를 하거나 강요, 위압하는 행위입니다.”

강간, 강제추행 뿐만 아니라 몰래카메라 촬영 및 게시, 유포와 같은 성폭력 범죄 행위 외에도,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가해지는 모든 성적 괴롭힘을 포함합니다.

# 성희롱이란?

“성희롱은 성범죄행위의 성립여부와 관계없이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일으키는 일체의 행위로서,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은 성적 행동 등 언어적·신체적·정신적·물리적 수단을 통하여 개인의 「성적 자기결정권」을 침해하는 행위를 말합니다.”

-기독교대 성폭력 예방과 처리에 관한 규정-

성폭력과 성희롱을 구분하여 사용할 때 성희롱은 학교 등의 단체에서 상대방이 원치 않는 성적 언행으로 개인의 「성적 자기결정권」 및 노동권, 학습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규제하기 위한 개념입니다.

\* 성적 자기결정권이란 자신의 몸이나 성적취향 등이 다른 이에 의해 침해되거나 강제적으로 구속되지 않을 권리를 말합니다.

**No means No, Yes means Yes!!!**

침묵은 동의가 아닙니다.  
동의를 의사는 반드시 언어표현으로 “예”라고  
확인될 때 성립됩니다.

## 성희롱 · 성폭력유형

### 1. 교수(강사)-학생간 성희롱 · 성폭력

- 목시적 혹은 명시적으로 학점이나 논문 통과, 진로 등으로 유인하여 원치 않는 신체 접촉을 요구, 강요하거나 성폭행하는 경우
- 강의실, 실험실, 연구실 등에서 성추행이나 필요치 않은 신체 접촉을 함으로써 학생의 학업을 방해하거나 거부감을 주는 분위기를 만드는 경우
- 강의실, 연구실 등에서 신체접촉, 데이트 강요, 성적인 모욕을 주는 말이나 행동을 하는 경우

### 2. 선후배 혹은 동기 사이의 성희롱 · 성폭력

- 행사(MT, 신입생환영회, 축제)와 강의실, 동아리 등의 활동공간에서 원치 않는 성적 농담, 음담패설 등을 하는 경우
- 선후배 동기관계 등 개인적인 친밀감을 빌미로 동의없이 행해진 모든 성적 접촉, 데이트 강요, 성적 모욕을 주는 말이나 행동

### 3. 공공장소에서의 성희롱 · 성폭력

- 도서관, 화장실, 서점 같은 공공장소에서 성적 접촉, 성기노출, 몰래 카메라 촬영 등

### 4. 데이트 성폭력

- 데이트 중에 일어나는 상대방이 원치 않는 성적언행  
\* 서로 데이트하는 사이라 해도 상대가 원치 않는 행위라면 그건 친밀감의 표현도 사랑도 아닌 상대를 상처주는 폭력입니다.

### 5. 스토킹

- 개인적인 관계를 원치 않는다는 표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따라다니며 만남을 요구하거나 개인적인 사실을 공개하겠다고 협박하는 등 계속적으로 신체적, 정신적 괴롭힘을 주는 경우

### 6. 통신매체를 통한 성폭력

- 본인 또는 타인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(전화, 메신저 등)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성적발언, 사진, 영상, 그림, 음향 등을 공유하는 행위를 말함
- 성폭력 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의거하여 2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.

### 2차 피해란?

“성폭력사건으로 인하여 신체적·정신적피해, 일상·학업·업무·대인관계 어려움 등의 피해를 겪고 있는 피해자가 주변인 및 가해자의 말이나 소문 등으로 2차적인 피해를 입는 것을 2차피해라고 한다.”

- 가해자 옹호와 두둔 (그럴 리가 없어. 훌륭한 선배인데. 술 먹고 한번 실수한 거지)
- 사건내용과 당사자 개인 신상을 주변 사람들에게 소문 퍼뜨리거나 SNS에 올리기
- 피해자의 평소 행실 등 험담 (원래 연애문제가 많았잖아)
- 피해자 비난 (손바닥도 마주쳐야 소리가 나지. 그 때 왜 거부하지 못했니? 그 밤에 왜 나갔니?)
- 사건에 대한 선부른 판단 (별일도 아니네. 그런 일 갖고 뭘 그래)
- 피해자에게 사건을 덮으라고 종용함
- 피해자에게 가해자를 용서하라고 강권 (가해자 인생이 이걸로 완전히 망가지면 어떻게 할거니)